



제428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각장애인 등의 금융거래 시 지원수단 제공 의무화〉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11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4. 25.

다. 회 부 일 : 2025. 4.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래자의 실지명의(實地名義), 즉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 및 비대면 거래가 갈수록 활성화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실명 확인 등 본인인증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이 커지면서 금융거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일부 금융권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금융거래의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쉽게 적용되거나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기관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에게 대하여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금융회사등이 시각장애인 등의 금융거래 시 이에 대한 지원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항 신설).

현 행	개정안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 ⑦ (생략) <신 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 시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 등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 등에 대하여 별도의 실명 확인 방법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지원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의 2024년말 기준 등록 장애인 수는 263만명으로, 이 중 시각 장애인은 24만 6천여명임.

- 등록 장애인 수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약 250만명에서 260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장애 원인은 88.0%가 후천적 질환(58.1%)이나 사고(29.9%)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¹⁾, 향후 고령화에 따라 장애인구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1)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2024. 11.

[표 1] 2015년~2024년 등록 장애인, 시각장애인 현황

(단위: 천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490	2,511	2,546	2,585	2,618	2,632	2,642	2,643	2,633	2,631
시각장애	253	252	253	252	253	252	251	250	247	246

(자료: e-나라지표 홈페이지 장애인 현황)

-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경험을 조사한 자료²⁾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등의 창구방문’(69.2%)과 ‘ATM 등 자동화기기 이용’(60.4%) 등 오프라인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이용 경험은 높은 반면, ‘모바일 방식’(26.1%),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인터넷 방식’(20.7%), ‘텔레뱅킹 등 전화방식’(8.0%)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³⁾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함)⁴⁾은 장애인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은 금융거래 과정에서 여전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2024. 11.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차별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금융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음.
- 2023년에는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자 도움없이 혼자서 통장 개설 또는 예금·대출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 거래시 응대매뉴얼”⁵⁾을 마련한 바 있음.
- 2025년에는 금융기관과 합동으로 장애인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발표⁶⁾하였으며, 시각장애인에게 계약서류를 단계적으로 점자 또는 음성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하였음.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각장애인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류 작성 시 부당한 차별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시각 장애인이 진정을 제기하여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결정한 사항⁷⁾에 따르면, 진정인이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대출 담당자는 반드시 대필자를 지정하고, 추후 대필자가 변호사를 만나 공증을 받도록 요구함.

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금융상품 가입 가능해진다”, 2023. 6. 19.

6) 관계기관 합동,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전략과 방안”, 2025. 4. 15.

7)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지역 ○○의 시각장애인 대출 차별’, 24진정0128600

□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이 시각장애인등에 대하여 별도의 실명확인 방법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지원수단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의 내용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및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금융실명법」은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⁸⁾된 법이라는 점에서, 금융소비자인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직접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등이 장애인을 포함한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78,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제21대국회에서는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8)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의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32,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이 발의⁹⁾된 바도 있음.

-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공통으로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06

9) 해당 개정안은 제21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